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68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황운하·김재원·이해민

김용민・조 국・김준형

강경숙 • 신장식 • 김선민

이재관 · 서왕진 · 윤종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 3.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 비용
- 4.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 ③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u>수립 비용</u>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 비용
	4.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u>비용</u>